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 공급망기본법(기재부) 제정, 소부장특별법(산업부) 개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 정비 완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주요 경과 : 법안 발의(민주당 황운하 의원 22.8.26,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22.12.15, 민주당 김한정 의원 23.3.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23.11.2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4.1.8)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망 3법 정책대상 >

法名	주요 정책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공급망안정품목)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
공급망기본법	·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핵심자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형 (044-203-5251)



1. 추진 경과

□ (산중위)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 의결('23.11.23)

* 황운하 의원('22.8.26), 양금희 의원('22.12.15), 김한정 의원('23.3.9)

□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4.1.8)

□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4.1.9)

2. 주요 내용

① 정의·개념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 확립

① (핵심자원 정의)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 안보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정의

*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등

②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 기본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 방향, 자원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 제시

② 추진체계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① (자원안보협의회) 기본계획 등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총 20명) 구성·운영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 필요시, 업계·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핵심자원의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 대응

- 점검·분석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및 지원근거 마련

3 평시관리 자원위기 사전 대비

① (위기에방) 핵심자원의 해외자원개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재자원화** 및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핵심자원별 공공·민간공급기관 비축의무(대통령령), 위기시 한시적 비축의무 등

**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의 재자원화 사업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비상동원광산 등 지원근거 마련

② (핵심공급·수요기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심공급·수요기업 지정·관리

4 위기대응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강화

① (위기대응체계) 단계별 위기경보발령(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 발생시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 구성·운영

② (긴급대응조치)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근거 마련

- 해외개발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수급안정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 핵심자원 할당·배급, 긴급도입, 수출제한, 공급기반시설 가동, 유통시설 사용 등

③ (특례) 신속한 핵심자원 확보 및 수요 조절을 위해 부과금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 등 규정

참고2

「공급망 3법」 비교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추진체계	위원회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장관)	·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장관)	· 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 산업부장관)
	기관	-	· 소부장 공급망센터 (산업부장관 지정) · 국가 희소금속센터 (산업부장관 지정)	· 핵심자원별 전담기관 (산업부장관 지정)
	기본계획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자원안보기본계획
정책대상		· 경제안보품목	· 소부장산업 공급망안정품목	· 핵심자원
조기경보시스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능	· 소부장 조기경보시스템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자료제출요구		· 정부 → (위원회 심의) → 지자체, 사업자 등	· 산업부장관 →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법인·단체	· 산업부장관 → 핵심자원 공급·수요기관 등
주요시책	평시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 공급망안정사업,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	·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 지정
		· 수입선 다변화	· 수입선 다변화	· 수입선 다변화
		·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	· 국내 생산시설 구축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 비축	· 재고확대	· 비축
		·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재자원화·대체물질 개발지원
		· 세제지원, 예타 신속처리	· 세제지원, 예타 신속처리	-
	비상시	· 위기품목 지정	-	· 자원안보위기경보 발령
		· 위기대책본부 구성	-	· 위기대책본부 구성
		·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 수급안정조치 발령
		· 위기품목 수입 관련 관세·조달·비용 등 지원	· 해외생산품목 반입명령	· 해외개발자원 반입명령·수입부과금 감면 등
		-	-	· 비축자원 방출, 배출권 추가할당 건의 등
	재원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